癌管理사업 改善策

成人病豫防관리, 어떻게하면 좋은가?

修錬병원 癌등록사업施行機關으로選定바람직

病院관장·病理·死亡진단·追求管理하는 中央組織필요
國家的次元서 組織·行政·財政등 적극적인支援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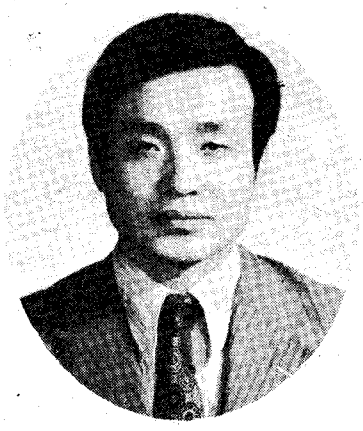

文 玉 綸
서 울 大 學 校
保 健 大 學 院 교 수

<癌登錄事業의 範圍>

암등록사업의 범위는 역학적인 견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함이 바람직하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암검진사업에서 발견되는 高危險集團및 환자·추구관리대상자가 등록사업의 대상자가 될것이다。그러므로 암등록사업이 전국을 골고루 카버할수있도록 하려면 검진및 진료기관의 정비와 전문요원의 양성배치가 선행해야 할것이다。

대상인구의 등록사업적용범위는 1차적으로는 암환자가 될것이다。점차 등록사업이 정규궤도에 진입하게되면 2차적으로 고위험집단에 대한 등록관리를 시행하여 암예방사업과 치료를 병행해 나가야 할것이다。

<事業對象醫療機關의 選定>

사업대상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癌환자를 처리할수있는 인력과 시설자원을 가진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관리의 측면에서 정부의 지도감독이 용이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의료이용도의 측면에서 암환자들이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킬수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된다。금반의 성인병환자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암환자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있음을 밝힌바 있다。여기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라함은 대학병원, 일반종합병원, 수련병원및 병원의 네가지로 나눌수있다。

첫째, 대학병원만을 사업시행기관으로선정하는 경우—암환자의 치료과정 전반에 걸친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있으나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제약되어 사업대상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모든 종합병원을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비록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암환자처리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뿐 아니라 일부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는 암환자처리능력을 구비한 경우(예:원자력병원)가 있어서 역시 사업대상자의 누락이 예상된다。

셋째, 병원급 의료기관을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암환자처리능력이 없기때문에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뿐더러 관리면에서도 힘들게 된다。

네번째, 수련병원을 사업시행기관으로선정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수련병원은 수련의들을 활용할수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병원경영면에서 비수련의보다는 크게 유리하다。따라서 병원경영자들은 수련병원지정기준에 맞추어서 소속병원을 수련병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일반사회에서도 수련병원은 비수련병원보다는 사회적인식도와 지위면에서 유리한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수련병원을 암등록사업시행병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과같은장점이 있다。

◇수련의병원은 규정상 전문의사수, 연간환자진료실적, 병원의 진단기재및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다。암환자는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할때 대체로 수련병원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되므로 사업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할수 있게된다。수련의병원은 수련병원시설기준에 따라서 醫務記錄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종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유리하다。

◇수련의병원지정기준을 이용하여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수련의양성과정에 의무기록에대한 훈련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무기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수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련병원을癌登錄事業施行機關으로 선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報告義務者의 選定>

보고된 자료의 정확도와 보고율은 보고자 누가되는가에따라서 크게 영향을받는다。

우선 의사를 보고의무자로 할 경우에는 임상기록전반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없고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된다。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類推해볼때 보고율이 낮아질우려가 있다。법정전염병신고율이 낮았다는것이 좋은예이다。그러나 법정전염병은 많은경우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울뿐만아니라 일단 진단을 내렸을경우에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며 罹患期間이 단기간인데 비하여 癌은 根治가 어려운반면에 만성적으로 계속되므로 보고율이 다소간 높아질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서는 보고업무의 분업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므로 의사들이 보고의무자로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의무기록사의 협조를얻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경우의 이점은 다음과같다。

◇모든 의무기록은 의무기록실에 모이며 이곳에서 자료가 보관되므로 癌등록기록도 여기에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醫務記錄士人力을 활용할경우에는 전문요원을 별도로 훈련시킴이없이도 등록사업을 수행할수 있다。

◇수련병원에는 의무기록실이 대체로가동되고 있기때문에 기존자원을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병원통계업무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기록실의 보강이필수적이다。암등록통계사업도 병원통계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야하므로 의무기록실을 통해서이 사업을 수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장점 때문에 의무기록사 암등록사업의 보고작성자로 활용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할수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병원경영에 소요되는 기본자료를 의무기록실을 통해서 산출해 내어야 할것이므로, 의무기록실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은 확실하다。효율적인 병원관리가 되도록 병원암등록사업도 병원경영의 한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특수치료나 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들 검사요원이나 치료요원을 암등록사업의 보고서작성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예를들어서 암진단검사, 병리검사, 방사선치료에 전문적으로 보조요원이 고용되어 일할때 이들 요원을 이용하는방법이 그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는모든 수련병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병원에서만 고려해 볼수 있겠다。

<癌登錄樣式>

병원에서 활용할 암등록양식은 시행이 용이하면서도 이를 작성함으로써 원인의 구명, 치료방법의 개발에 기여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것이다。이러한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병원의 양등록양식이 통일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환자로부터 파악해야할 일반사항, 진단에 관한 사항, 치료와 관련되는 사항, 추구관리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世界保健機構에서는 국제적인 통일된암등록양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국의 병원암등록양식을 검토하고 그 경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병원암등록의 목적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 충분한 연구없이 등록표가 작성되고 있다。

◇질병유형의 命名法이나 등록절차양식에 통일성이 없고 다양하다。

◇기록결과의 정확성을 기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양식의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가 즉시 사용할수 있는 양식의 개발을 서두르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병원암등록양식은 表Ⅳ—8과 같이 필수사항 28항목, 선택사항 26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Punch Card화 되어있다。이 양식을 우리나라의 각병원이나 단체가 개발한 암등록양식과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大韓癌協會가 개발한 엽서식 등록양식은 지나치게 간단하여 환자의 성별, 연령, 주거지, 암종별 진단법등을 파악할수 있는데 불과하다。

◇국립중앙의병원이 개발한 암등록표는 대한암협회가 개발한 양식보다는 다양한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암의 진료방법을 구체화하여 추가한데 비하여 치료과정에 대한 항목은 제외되어 있다。

서울大學校 醫科大學에서 개발한 癌登錄樣式은 前者에 追加해서 追求管理情報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樣式이 3枚로되어있어 登錄樣式 자체의 管理에따라 번잡스럽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全國規模로 癌登錄事業을 개발하는 경우 登錄樣式의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療學的인 側面과 患者管理의 側面에서 國際的인 비교가 가능해야할 것이다。

둘째, 全國規模로 시행해야 하므로 우선 修練病院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셋째, 患癌의 人的事項, 診斷및 治療에 관한事項 追求管理事項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점을 考慮할때 우리나라에서는 全國規模의 癌管理事業을 개시할때 처음부터 世界保健機構가 권장하는 國際統一樣式의 사용이 바람직하다。世界保健機構의 樣式은 調査項目의 數가 많기는 하지만 事業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될경우 우리나라의 醫療機關에서도 能히 調査할수있는 樣式으로 판단된다。이의 施行을 위해서는 强力한 行政支援과 規定上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함은 물론이다。

<표 6>
登錄樣式의 項目比較一覽

세계보건기구	서울大學校	국립의료원	대한癌협회
병원지정번호		○	
환자등록번호	○	○	
주소	○	○	○
성별	○	○	○
생년월일	○	○	
출생지	○	○	○
성명	○	○	
전화번호	○	○	
초진년월일		○	
과거진단치료	○		
결혼상태	○		
초입원시나이			
진단검사내용	○		○
癌의최종진단법		○	
원발장기병	○	○	○
조직학적진단명	○	○	
질병상태	○		
치료	○		
수술시상태			
추구관리			
사망년월일	○		
사망원인	○		
생존기간		○	
부검의결과	○		
計(24항목)	17항목	13항목	6항목

癌登錄事業展開를위한行政支援

<法令整備>

癌登錄事業이 全國을 대상으로하고 事業自體를 원만히 施行하기 위해서는 對象病院, 登錄節次, 情報의 내용및 그수집체계, 情報의 配常등을 統制, 調整, 管理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整備해야한다。

具體的인 예로서 現行 修練病院을 癌登錄事業機關으로 지정하는경우 癌의 登錄, 診療, 追求管理分野에 대한 修練規定의 强化, 登錄및 報告義務規定의 新設, 對象機關別 診療圈의 設定方法등을 規定할수있도록 法令이 整備되어야할것이다。

<組織>

國家癌管理事業은 癌登錄事業, 專門人力養成, 臨床活動, 癌硏究, 保健敎育등으로구분할수 있다。

국가암등록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은 그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최소한 다음직종의 인력이 필요하다。

▲기구의 책임자 ▲역학전문가 ▲병리전문가 ▲통계전문가 ▲행정요원 ▲비서 ▲코딩요원 ▲초록작성전문가 ▲사서 ▲기타 보조요원

<行 政>

암의 검진·진료기관에서는 암에 대한 검진·진료사항과 검진에서 발견된 전암상태, 암및 추구관리사항을 국가암등록사업에서 규정한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따라 등록조치하고 이를 일정한·간격(월별 분기별등)으로 이를 국가암등록사업(기관)에 보고하도록 해야한다。

국가암등록사업에서는 검진·진료기관에서 제출되는 정보를집계 정리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함과 동시에 암의발생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실시하고 암에 관련되는 의료수요의 예측과 이를 관련부서의 계획수립에 활용토록 한다。

<財 政>

국가암등록사업에는 최소한 다음의 경비가 투입되어야 할것이며 이는 국고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각종자문 소요경비 ▲정상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실 소요경비 ▲공공요금 ▲각종양식 소요경비 ▲서적구입비 지침서작성비 ▲각종정보배포 소요경비 ▲통계자료 처리비 ▲여비및 회의비 ▲본사업에 참여하는 검진및 진료기관의 보고 등록작성요원의 훈련비

<訓 練>

암등록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가 결정된 검진, 진료기관의 등록, 보고작성요원의 훈련을 시행하여 전국적인 보고 및 등록업무를 균질화해야 할뿐더러 정확을 기할수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피교육자의 교육배경에따라 훈련기간에 차이를 두어야할것이며 적어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식을 기록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되어야 한다。